

## 공 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72호

##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휴면지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에 앞서 휴면조합 지정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 지정 사전통지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 1. 대 상 : 서울도봉강북수퍼마켓협동조합외 2

| 연번 | 조합명            | 이사장  | 설립인가일      | 소재지                                                 | 처분내용 |
|----|----------------|------|------------|-----------------------------------------------------|------|
| 1  | 서울도봉강북수퍼마켓협동조합 | 이정희  | 2012.12.13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51<br>(쌍문동 120-1)                   | 휴면지정 |
| 2  | 잠실올림픽로사업협동조합   | (공석) | 2010.11.12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1 2층<br>(잠실동 250-13 2층)             | 휴면지정 |
| 3  | 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   | (공석) | 2007. 4.21 | 서울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프라스틱회관 5층<br>(쌍림동 146-2 프라스틱회관 5층) | 휴면지정 |

- 행정처분 원인 및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제로 활동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
-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및 제133조(행정명령)
- 의견제출 : 휴면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2018. 1.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경제정책과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홍기석, 02-2133-5241)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84호

##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구역명 :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비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익선<br>지구단위계획구역 | 종로구 익선동<br>156번지 일대 | -      | 증) 31,121.5 | 31,121.5 | -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도시개발과,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5. 열람내용 :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6. 관련도서 비치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7.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02-2133-0742),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33-2684)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호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윤찬웅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조산2길 ** | 일시: 2017.10.18. 11:08<br>장소: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로 월드컵<br>파크 7단지 정거장앞<br>내용: 길이 17.8m(1.1m 초과) | 과태료: 30만원 부과<br>처분일: 2017.11.28.<br>납기일: 2018.01.31. |